

『구미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2년 10월 22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2년 10월 23일

라. 상정일자 : 2012년 10월 31일

제17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경제통상국장 이 홍 희

나. 제안이유

- 「구미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」는 민간 참여의 근거 부족으로 ‘노사정 협의회’를 ‘노사민정 협의회’로 확대·개편하여 지역내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추진기구로서의 협의체 역할을 정립하기 위함.
- 근로자, 사용자, 주민 및 구미시 간 상생을 통한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○ 조례의 목적 및 노사민정의 책무 규정(안 제1조, 제2조)

-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사회 안정에 기여

○ 협의회 기능 및 구성(안 제3조, 제4조)

- 노사민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
- 노사분규 발생 예방 및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
- 근로자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
-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

○ 협의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(안 제6조, 제7조)

○ 사무국의 설치 및 기능 (안 제9조)

○ 실무협의회 구성 및 기능(안 제10조)

라. 참고사항

○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

○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희 철

○ 본 개정조례안은,

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을 근거로 “구미시노사정협의회”에 주민을 참여하도록 추가하여, “구미시노사민정협의회”로 확대개편 하므로 노사 관계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사회안정에 기여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,

○ 주요 개정내용으로는

- “구미시노사정협의회”의 명칭을 주민을 추가로 포함시켜 “구미시노사민정협의회”로 수정하였으며,
- 협의회 등의 회의준비, 진행, 운영예산 수립 등을 위한 사무국을 설치하고, 실무협의회의 회의와 기능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.

○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 가결